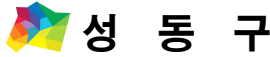


2015. 감사 결과 공개

복지부서 종합감사

2015. 12



(감사담당관)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수범내용은 전과하고 불합리한 요인은 개선하여 복지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함
- 감사기간: 2015. 10. 21. (수) ~ 11. 6. (금) <기간 중 13일>
 - 예비감사: 2015. 10. 21. (수) ~ 10. 23. (금)
 - 실지감사: 2015. 10. 26. (월) ~ 11. 6. (금)
- 감사대상: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 감사범위: 2013. 1. 1. ~ 2015. 10. 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인원: 감사팀장 등 5명, 구민감사관 2명
- 중점 감사사항
 - 복지급여·보조금 집행 적정성
 - 복지시설 지도·감독 실태
 - 주요사업 추진 실태 등

II 현 황

직원 현황 (단위: 명, 2015. 11월현재)

부서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보육가족과	17	1	4	5	4	2	1
사회복지과	21	(1)1)	3	4	4	6	3

1) 사회복지과 겸임인원

사업예산 편성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육가족과	2013년	73,664,685	68,548,753	5,115,932
	2014년	78,152,037	71,415,745	6,736,292
	2015년	75,025,917	70,068,314	4,957,603
사회복지과	2013년	31,241,475	28,855,857	2,385,618
	2014년	32,450,270	30,090,638	2,359,632
	2015년	39,250,564	33,419,069	5,831,495

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가구, 명)

맞춤형기초 (생계급여)		한 부모		기초연금		보육료		차상위(개인)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
3,641	5,376	940	2,347	15,238	18,877	15,147	16,462	743	92	1,370

복지시설 현황

(단위: 가구, 명)

구분	계	종합 복지관	장애인 시설	구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소계	민간	가정보육	종교부설	직장보육
시설수	209	5	12	55	137	46	83	3	5

주요사업

부서명	사업내용
보육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가정양육수당 지급 ▷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여성일자리학대, 무지개나눔장터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적응 지원사업, 다문화카페 운영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단체 관리,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및 바우처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복지시설 관리, 장애인등록 및 복지급여 관리 ▷ 국민기초수급자 보장결정,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저소득주변건강 보험료 지원사업 ▷ 자활사업, 주거급여, 노숙인·부랑인 관련업무, 자활근로사업

III 감 사 결 과

1 총 평

- 보육가족과·사회복지과의 예산집행, 복지시설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 관계 법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보육가족과에서는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 공개선정 및 공동구매와 어린이집 친환경 식자재 공동구매 추진 등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등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발굴과 공공부조망 확충에 노력
 -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신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 지역사회센터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다만,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미숙지와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복지급여 부정지급에 대한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 소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 일부 부적정한 사례가 적출되었음

□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보완하고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 감사사례에 대해서는 업무 총괄부서에서 관련부서 및 기관에 사례를 전파하여 향후 재발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 감사결과 조치사항(총괄) >
(단위:천 원, 명, 건)

신분상 조치(인원)			시 정						제도 개선	모범 사례	
소계	주의	구두 주의	소 계		환 수		추 징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2) 주요지적 사항

분 야	적출내용
복지시설 지도감독	▷ ☆☆☆☆☆☆종합복지관 퇴직적립금 정산액 미반납(○○○천 원) ▷ ◇◇◇◇◇◇◇◇개발센터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2건)
복지급여	▷ 양육수당과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자에 대한 환수조치 미이행(*명, ○○○천 원) ▷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확인절차 소홀로 지급대상이 아닌자에게 지급(*명, ○○○천 원) ▷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 급여지급 부적정(1명, ○○○천 원)
시설공사	▷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원가계산 과다산정(1건, ○○○천 원) ▷ 복지시설 보강공사 원가계산 제비를 적용 부적정(1건, ○○○천 원)
복지일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규정 미준수('14년 *명, '15년 *명) ▷ 자활기금 전세점포 사용수수료 채납관리 소홀(17건, ○○○천 원)

(3) ◇◇◇◇◇◇◇◇개발센터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함
- 보육가족과장은 ◇◇◇◇◇◇◇◇개발센터에서 2013. 5. 15.자 강사 ●●●에게 강사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과 주민세 ○,○○○원인 ○○,○○○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였는데도 보조금 정산 시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소홀히함

조치할 사항 보육가족과장은 ○○,○○○원을 원천징수 하도록 “재정상 추징” 조치

2) 복지급여 분야 : 5건

(4) 양육수당과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자 급여 환수조치 소홀

- 보건복지부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예산 반납 및 세외수입 징수 등 환수절차를 이행하여야함
- 2014. 7. 30.자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에서 보육가족과로 통보한 양육수당과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총 9명중 4명이 감사일 현재까지 중복지원액 총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도 세외수입 징수절차에 따른 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보육가족과장은 ○○○원을 “재정상 환수” 조치, 환수조치를 소홀히한 직원은 “주의” 조치,

3)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

1) 법인·시설 예산회계 분야: 3건

(1) 퇴직적립금 정산잔액 미반납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하여야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지방보조사업 완료시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여야함
- 사회복지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인 (재)□□□□□□□□회에서 2014. 10. 31.자 퇴직연금제도 변경후 정산잔액 ○○○,○○○원을 퇴직적립금 통장에 예치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반환조치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함

조치할 사항 ① 사회복지과장은 ○○○,○○○원을 “재정상 환수” 조치
② 보조사업자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직원은 “주의” 조치

(2) ◇◇◇◇◇◇◇◇개발센터 세출예산 회계처리 부적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용도 외 사용 금지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함
- 보육가족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산취득 성격의 빚프로젝터 대여금으로 2013. 4. 1. 자 집행한 ○○○원과 2013. 6. 18.자 집행한 빚프로젝터 수리비 ○○○,○○○원인 총 ○○○,○○○원을 구청장 승인 없이 집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함

조치할 사항 보육가족과장은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5) 지급기간이 미도래한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12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후 12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보육가족과에서는 출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전출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명에 대하여 총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기간 도래일 이전에 지급하거나,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지급함

조치할 사항 보육가족과장은 ○○○원을 “재정상 환수” 조치

(6) 조건부 수급자 자활장려금 지급 부적정

- 「2015.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자활소득의 30%가 생계급여기준보다 클 경우 생계급여 기준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자활소득에는 초과근무, 휴일근무 수당, 주차수당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복지과에서는 ◎◎◎◎◎센터에서 2015년 자활근로사업인 ◇◇◇◇◇사업단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 3명에게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지급내역에 대한 입력을 누락하여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총 ○○,○○○원 보다 총 ○○,○○○원을 과다 지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소홀히함

조치할 사항 사회복지과장은 ○○,○○○원을 “재정상 환수” 조치하고, 향후 누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7)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확인절차 미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 주민센터 출산장려금 접수담당자는 별지서식 제1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식 하단에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확인하고 확인사항을 기재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인 보육가족과에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확인조서를 확인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여야함
- 보육가족과에서는 2013년도 7개동, 2014년도 6개동, 2015년도 7개동에서 확인조서 작성없이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총괄부서인 보육가족과에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출산장려금 지급업무를 소홀히함

조치할 사항 ① 보육가족과장은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확인절차를 준수하도록 동 주민센터 행정지도 ②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직원은 “구두주의” 조치

(8)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급여지급 부적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에 따라 유사한 복지급여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아야함
- 사회복지과에서는 2015. 1 ~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지원을 받고 있던 ●●●에게 2015. 2 ~ 4월까지 서울형기초보장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2015년 2월분 〇〇,〇〇〇원을 중복지급함

조치할 사항 ① 사회복지과장은 중복지급한 〇〇,〇〇〇원은 “재정상 환수” 조치 ② 확인절차를 소홀히한 직원은 “구두주의” 조치

4) 기타분야: 2건

(11) 자활기금 전세점포 사용수수료 체납관리 소홀

-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전세점포 임대지원)에 따라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3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연 15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과에서는 서울특별시성동구자활기금에서 ◆◆◆◆사업단 등 5개 사업단에 지원한 전세점포 용자에 대한 사용수수료 2014년 12월분과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분인 총 17건 〇〇,〇〇〇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독촉고지를 이행하지 않는 등 체납관리를 소홀히함

조치할 사항 ① 사회복지과장은 〇〇,〇〇〇원을 “재정상 추징” 조치 ② 자활기금 용자 관리를 소홀히한 직원은 “주의” 조치

(12)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절차 미준수

- 보건복지부 지침 「201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2년 연속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반복참여를 제한하고, 「201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서는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 허용하고 2년 초과 시에는 1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사회복지과에서는 ‘201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26명을 선발하면서 2년 연속 참여자 경증장애인 *명을 중증장애인 및 신규신청자 등 *명에 우선하여 3년 연속 반복하여 참여시키고, 2015년 같은 사업 참여자 **명을 선발하면서 3년을 연속하여 참여한 경증장애인 *명을 중증장애인 및 신규신청자 등 10명에 우선하여 참여시킨

조치할 사항 사회복지과장은 수혜대상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선발하도록 관련 직원을 교육하고, 동 주민센터에 사례전파

3) 시설공사 분야: 2건

(9)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원가 과다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라 제조·시공·용역 등의 경우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으로 결정하여야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운반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폐기물의 중간수집, 상차, 운반, 최종처리비는 경비로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4. 10. 16. 최초 계약하고, 보육가족과에서 공사 시행하고, 건축과에서 공사 감독하여 2015. 10. 17. 준공한 ■■■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건축,기계)원가계산 시 경비로 편성하여야함 폐기물상차비 등 5건을 노무비로 편성하여 〇〇〇원을 과다산정하고 대가를 지급함

조치할 사항 보육가족과장 및 건축과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원가를 정확히 산출하도록 관련직원 교육

(10)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산정 부적정

- 보건복지부 지침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같은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에는 적절한 제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함
- 사회복지과에서는 ☆☆☆☆종합복지관에서 2013. 9. 24.부터 2013. 10. 24.까지 시행한 ◇◇보호작업장의 화장실, 지하식당 및 프로그램 개·보수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시 기타경비 제비율 5.4%를 적용하지 않고, 6%로 적용하여 〇〇,〇〇〇원을 과다산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함

조치할 사항 사회복지과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원가를 정확히 산출하도록 관련 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

4 제도개선 목록

연번	제도개선명	부서명
1	출산장려금 신청기한 제한규정 완화	보육가족과
2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서식 개선	〃
3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에 정보공시 항목 포함	〃
4	자활기금 전세점포 임대료 이자 및 연체자율 인하 검토	사회복지과

5 우수사례 목록

연번	제도개선명	부서명
1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 및 유기농 식자재 공동구매 추진	보육가족과
2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다문화카페 이음터” 운영	〃
3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사전예방 교육 실시	사회복지과